

03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해결이 원만하지 않다면?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비용 등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학교폭력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피해학생으로 확인되어 심리상담, 일시보호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 중 가해자로부터 관련 비용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범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연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피해 지원 절차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자치위원회	▶	피해치료비등 청구 학부모	▶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공제회	▶	구상권 행사 공제회
------------------------	---	---------------------	---	------------------------	---	---------------

Check

필요서류

-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진단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통장사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사업」

목적도 장소도 다양해진 학교 밖 교육활동!

아이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걱정된다면?



여행자공제 가입을  
확인하세요.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울타리  
"보상의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보상"  
학생을 안전하게! 부모님을 mam편하게!!

2019

소중한 우리아이  
학교에서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꼭! 기억하세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제회가 보상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TEL : 1670-4972 / FAX : 720-019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01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제도]

###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 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진료비),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학교안전법 제2조)

#### Check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제제도는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진료비는 전액 보상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되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구분	급여항목		비급여
보상 범위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보상
	전액 보상		

### ■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학교장이 통지한 사고에 대해 학부모는 언제든지 학교 또는 공제회로 공제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하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학교안전사고 보상 절차



#### Check 필요서류

공제급여청구서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가능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 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 지급항목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학생과 학부모 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
청구인 통장사본	청구하시는 부모님 본인 통장사본



#### Check 청구방법

- 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공제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 Check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전, 사고 통지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교에 알려 공제회로 사고발생을 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670-4972) 또는 홈페이지(www.ssi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학교안전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제도]

###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 형제자매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 지원 대상자의 확정  
상담지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확정
- 지원 범위(금액) 및 기간  
상담지원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의료기관(병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 심리상담기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가 상주하는 교육청 지정 기관

#### Check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는 꼭 공제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모두가 상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